

스티커자판기 특소세 제외, 그 거부할 수 없는 대세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자판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대표적인 특소세 적용의 부당 케이스로 논란이 일었던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이 연이은 행정심판 승소로 꺼져 가는 시장에 있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 1부(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한보전기가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세관을 대상으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은 특히 지난 4월 21일 삼원사진기기의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에 이은 연이은 승소로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제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을 맞았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산업계는 영업용기기이며 가뜩이나 고가형기계인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30%의 특소세 적용으로 단기간안에 경쟁력을 잃고 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물론 이번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 재판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 측이 1건도 아닌, 2건의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스티커자판기의 특소세 논란은 번복 없이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애초 가능성성이 회박 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시킨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는 이번 승소. 그러나 앞으로 최종 승소와 완전한 특소세 철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관련업체들이 적극 연계해서 더욱 큰 결속력을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금호에서는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산업계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향후 시장상황이 어떠한 반전의 계기를 맞아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집중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소세 행정심판 승소에 이르기까지

실로 길고도 힘든 과정이었다. 이번 부산지방법원 특소세 승소에 이르기까지는 산업계의 진을 빼놓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관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그리고 이번 부산지방법원 소송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무려 1년 8개월 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동안에 스티커자판기 산업은 폭발적인 시장특수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으며 단기간 안에 시장이 급락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등 실로 파란만장한 굴곡을 겪어 왔다.

어떤 분야보다 빠른 산업 사이클을 보여 온 스티커자판기 산업에 있어 특소세 문제가 이처럼 오랜 시간을 끌자 자연 업체들의 의욕과 기대도 하강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특소세 제외문제는 점점 가능성 없는 사안으로 비춰 졌고 심지어는 이같은 사안에 뛰하리 메달리나 하는 냉소적인 시각도 작용했다.

정부부처가 한번 정한 법이 고쳐지기란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특소세 문제의 너무 단기적인 해결을 기대했던 데서 의욕저하의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령개정을 정부 관계부처가 진행해 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정부세원의 알자로 작용하고 있는 특소세법을 재경부가 산업계의 입장을 고려, 자발적으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정부세원에 관계되는 세법들은 어지간해서는 고쳐지지 않는 철통같은 차단막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실 가능한 한도에서 가장 명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적 대응이다. 법적으로 현행 특소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그 관계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법적대응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까닭은 공정성에 근거한 객관적인 법적 해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대정부 대응작업은 관계부처의 입장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주장논거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에 비해 법적판결은 납세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판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요인때문에 본협회에서는 법적대응에 큰 기대를 걸고 업체들을 결속해 공동대응을 진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97년 11월 20일 한보전기를 대표업체로 해서 부산 동래세관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이 안건이 기각됨에 따라 98년 3월 26일에는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는 국세심판 회의를 거친 끝에 그 해 7월 기각결정이 났고 그 시점 이후에 본격적인 행정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격적인 행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협회는 법적대응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업체를 결속하기 시작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코자 일부 스티커자판기 분과위원회 업체들로부터 공동분담금을 각출 받아 소송경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부산지역 세무분야전문 김백영변호사를 전담 변호사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9월 11일 정식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송제기후 7~8차례에 이르는 변론제기와 본 협회 김지완 과장의 증인출두 등의 재

판과정을 거쳤다. 또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 광학기기협회로부터 스티커자판기가 특소세 과세대상품목으로는 그 제품특성상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진병춘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물품인 스티커자판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을 대상으로 삼원사진기기의 소송이 진행되었었다. 삼원사진기기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삼원사진기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4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스티커자판기 품목이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인 고급사진기로 보기 힘들며 따라서 이 품목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이 연이은 두건의 행정법원 승소로 특소세 부과 철회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오고 있다.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인 사안이 산업계가 바라던 대로 승소판결이 나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소세를 납부해야 했던 산업계가 한껏 고무되어 있다.

굳건한 결속력을 통해 진행해야 할 향후 법적대응

물론 연이은 행정법원 승소는 피고측이 고등법원 항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결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까지도 가야 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번 소송의 피고 측인 재경부, 관세청은 소관부서의 면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선불리 원고승소 판결에 굴복을 하지 않는 맞불 작전을 선택했다. 따라서 최종판결이 나 특소세가 제외되는 시점은 선불리 예측하기 힘든 단계이다. 만약 대법원까지 최종판결이 가야 할 경우는 그 시간적인 소요가 엄청 길어 질 수 있다.

이처럼 특소세에 대한 앞으로의 법적대응은 업계가 원하는 만큼 단기간 안에 결판이 나기 힘들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기다린 것 같은 끈질긴 인내가 앞으로 필요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업체가 현재의 행정심판승소에 한껏 고취되어 들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보다는 다시 차분한 자세로 돌아가 향후 법적대응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응 장기화에 따라 지치지 않는 업체들의 굳건한 결속력이다. 현재처럼 사업이 부진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오랜 시간소요에 지쳐 업체가 지레 포기를 할 확률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산업계는 굳건한 결속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향후 법적대응을 지켜봐야 한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두건의 소송이 연이어 승소했기 때문에 상급법원 판결 역시도 산업계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무척 크다. 오히려 초조해야 할 쪽은 본 산업계가 아니라 피고측인 재경부와 관세청 쪽이다.

행정심판 승소가 끼치는 파급효과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나락으로 떨어진 스티커자판기 시장에 있어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이번 낭보는 꺼져 가는 산업계 불씨를 다시 지필 중요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최근의 스티커자판기 시장은 특소세가 반영된 가격대로는 제대로 수요를 창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이는 특소세 부과가 과거처럼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시장은 완전 막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과거처럼 폭발적 운영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마당에 1200만원 대에 이르는 스티커자판기를 구입할 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승소는 앞으로 스티커자판기 관련업체의 가격정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물론 특소세가 완전 제외되어야 가격대의 거품제거가 본격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부터라도 과도하게 책정된 가격대의 재조정 동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소세 제외라는 기대심리는 향후 업체들의 가격정책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공격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즉 시장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틈새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가격대로의 거품제거 작업이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규업체들의 시장참여도 더욱 촉발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특소세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발목을 잡혀 시장참여를 주저하던 업체들이 특소세 제외의 기대심리로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진행할 확률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또한 이번 승소는 앞으로의 진행형 사항으로의 기대뿐만 아니라 과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소세를 납부해야 했던 업체에 있어서도 큰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스티커자판기 특소세 적용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최종 판결이 나면 그동안 권리보전을 진행한 업체들은 특소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적지 않게 납부해야 했던 특소세를 환급 받게 되는 상황은 어찌 보면 스티커자판기 사업에 있어서의 최대 반전요인이라 할 수 있다. 포기했던 돈이 고스란히 수익으로 유입되는 상황. 특소세 제외의 꿈은 오히려 과거 상황에서 더욱 극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특소세를 납부한 모든 업체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정한 권리보전을 진행한 업체만이 해당이 된다. 따라서 과거 특소세를 납부한 개별업체들은 현시점에 반드시 권리보전을 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금번 행정심판 승소판결이 나자 권리보전을 해 놓지 않은 일부 업체에서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를 업체들은 주로 이번 특소세 공동대응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자신의 사업에만 골몰한 탓에 권리보전이 무엇인지, 왜 필요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정기간 내에 권리보전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서 완전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이다. 그동안 협회에서 법적대응을 진행하며 누차 강조했던 권리보전의 필요성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현상황에 있어 업체들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보전을 하고자 분주한 업체들이 많다. 현재와 같이 유리한 상황에서 권리보전을 제대로 해 놓지 않는다는 것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데 개별업체는 특소세 환급시에 대비해 최대한 권리보전을 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권리보전은 최대한 시간을 끄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어차피 이번에 걸려 있는 두건의 소송결과에 따라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기간 안에만 권리보전을 진행해 놓으면 최대한 시간끌기 작전을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

그 구체적인 권리보존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소세를 추징당한 업체는 관세이전 내국세이전 간에 고지일자 기준 6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 놓아야 한다. 만약 이 작업을 진행해 놓지 않으면 차후 특소세가 번복이 되더라도 기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 특소세를 자진 납부한 업체들의 경우는 납부시점 기준 1년 이내에 세관 및 세무서장에 경정청구를 진행해 놓아야 한다. 이에 세관장 및 세무서장은 두 달 이내에 경정처분을 내려 줘야 하고, 이 절차가 거부된 경우 별도의 심사청구를 진행해 놓아야 한다.
3. 심사청구가 기각이 되면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이 심판청구가 기각이 되면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일단 추징된 세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특소세를 납부하고 향후 법적대응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받게 되는 경우 연 10.95%의 이율이 적용되게 된다.

대정부 대응도 유리한 상황을 맞아

협회의 특소세 대응에 있어 또 다른 방향은 국회를 통한 대정부 건의이다. 그동안 협회는 국회를 통한 대정부건의 작업에도 큰 주안점을 두었고, 기타 관계부처를 통한 건의, 산자부 기업규제완화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과제 제출 등의 작업을 진행했었다.

이같은 대정부건의 작업중 그래도 가장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국회를 통한 대정부건의이다. 협회에서는 지난 해 10월 특소세 부과 철회에 대한 제조 및 관련단체의 공동탄원서를 국회에 정식 제출했었다. 그 이전까지는 재경분과위 개별위원들을 통한 건의를 진행했지만 14개업체의 서명날인을 받아 산업계의 강력한 희망을 파력한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탄원서는 재경조사위에서 정식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 졌고, 협회는 이에 따라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며 특소세 적용의 부당성을 알렸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회 재경분과위 장재식위원회에 특소세 적용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 청원서는 앞으로 재경분과위에 정식 상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를 통한 대정부 건의는 연이은 행정심판의 승소로 유리한 상황을 맞고

있다. 협회가 제출한 탄원서와 청원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고무적인 일은 국회에서도 특소세 적용의 부당성과 철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국회 재경조사위의 경우도 연이은 행정심판 승소가 이어지자 재경부 소비세과를 대상으로 이 품목에 대한 특소세 조치 철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특소세 철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갖는다 해도 문제는 단순치가 않다. 특소세 문제가 위낙 중요한 국가의 세원에 관한 문제인데다 보수적인 재경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법률개정을 이끌어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더라도 국회 대정부전의의 비중을 줄일 수 없는 이유는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진정으로 산업발전과 육성적인 측면에서 본 사안에 대해 확실한 조치를 내려 주었으면 하는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특소세 시행령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게 된다.

만약 국회를 통해 재경부의 특소세 관련규정이 개정된다면 현재 하루가 다르게 힘을 잃고 있는 산업을 재생시킬 가장 확실한 묘책이 될 수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 현재 진행되는 법적대응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어서 나중 특소세가 제외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미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경우 특소세 철회 효과는 과거의 권리보전을 진행한 업체에 주로 나타나지 별다른 산업육성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차원에서 적극 개입,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키는 방법이 모든 상황을 일사천리로 풀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된다. 이런 경우 재경부에서 지금까지 과세의 부당성을 인정, 법령개정을 진행해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법적대응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국회를 통한 대정부전의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다시는 부당한 과세정책으로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스티커자판기 특소세 부과를 산업체가 아무 대응 없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대상품목이 생겨날 수 있다. 다시는 산업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정부의 세원 확보의 희생 양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특소세 대응은 큰 중요성을 갖는다.

강제적으로라도 결속력을 만들어야 할 때

앞으로 특소세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체의 결속력이다.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법적대응이 앞으로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지쳐 가고 그 결속력이 와해 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의 열망인 특소세가 제외되기 위해서는 각 업체들의 굳센 결속력이 없어서는 안된다. 결속력이 와해되고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면 현재의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적대응의 최종 단계까지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의 특소세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스티커자판기 업체 자신의 문제이다. 협회가 아무리 전면에 나서 이 문제 해결의 교두보가 된다고 해도 이는 각업체들의 결속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들이 와해된다면 협회에서도 더 이상 이 사안을 이끌고 나갈 만한 힘이 없다.

따라서 현재의 특소세 대응은 내 힘이 아니면 안된다는 적극적인 업체들이 참여의식이 중요하다. 아무런 협조도 안하고 현재의 시류에 편승, 반사이익이나 챙기자고 뒷짐지고 있는 업체들은 정말 각성해야 한다. 이는 마치 집안의 우환이 있는데 혼자만 발뺌하고 있는 이치와 똑같다.

방관자들은 이제 각성을 하고 현재의 중요한 시점에 힘을 모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의 반전의 기회를 만든 본협회와 관련업체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고맙게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공동대응에 적극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스티커자판기 시장의 세대교체 동향 가속화로 신규업체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본협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법적대응 및 대정부대응은 이제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지속해 가기 어려운 절박한 시점에 있다. 지금까지 공동분담금 갱출을 통해 특소세 대응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었으나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 등의 막판 승부수를 앞두고 경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방법은 공동분담금 갱출을 다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경비상의 어려운 상황이 본격 힘을 받아야 할 특소세대응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 스티커자판기 업체들은 적극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특소세의 제외가 미치는 산업발전적인 측면, 과거 기납부한 특소세 환급 등의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면 각업체가 공동분담금 납부를 통한 공동참여를 해 나가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반드시 특소세를 제외해야 하는 과제처럼 반드시 공동협력을 해야 하는 의무 역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맞고 있는 현 특소세 대응이 산업계의 더욱 굳건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승리의 한풀이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산업계와 더불어 기원해 본다.

특소세 소송 승소 판결문 전문 게재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98구5224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김용규
광명시 광명 7동 290의 2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동래세관장
부산 연제구 거제 1동 1463의 4
소송수행자 김인근, 김형대, 이광태

변론종결 1999. 5. 12

주문 1. 피고가 1997. 9.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9,326,410원 교육세 5,797,920원 부가가치세 2,512,430원, 가산세 2,763,670원 합계 30,400,4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지완의 증언 및 한국광학기기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일본에서 스티커인쇄기 Sticker Magic "JALECO" Brand 10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1997. 6. 30. 피고에게 HS관세율표 세번 9006.40- 0000호(즉석인화사진기), 관세율 8%,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 하였고 (수입신고번호 032-10-18214-97-0603274), 피고는 1997. 7. 8.이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7. 9. 22.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제1호에 해당하는 고급사진기라고 인정하고 특별소비세율 20%를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19,326,410원 및 이에 따른 교육세 5,797,920원, 부가가치세 2,512,430원, 가산세 2,763,670원을 증액 경정하고, 원고에게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가운데 원고에게 추가 납부고지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물품은 ①주로 사용자의 얼굴 등 실물인 피사체의 상을 촬영하여 모니터에 보내는 CCD(고체촬상소자) 반도체를 이용한 PC카메라와 이미 기기내 IC ROM에 저장되어 있는 배경그림을 동일한 모니터에 보내는 2개의 렌즈, ②각 렌즈에서 보내지는 영상을 표시하는 모니터, ③모니터에 나타난 상을 사용자가 선택한 매수로 분할하여 출력하는 프린터, ④그리고 기기에 내장하고 있는 배경그림과 사용자의 실물을 합성하여 편집하는 기능을 통제하는 부품들로 구성된 전자회로기판(P.C.B)과 각 부품들을 상호 연결하는 케이블, 스피커 및 이러한 부품들을 설치하는 캐비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물품은 ①PC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사용자의 얼굴을 모니터에 보내서 그대로 출력하거나, ②이를 기기내에 저장하고 있는 36가지의 배경그림과 합성하여 영상을 편집한 후, ③또는 배경그림만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용지는 사진 인화지가 아닌 스티커 제작 전용용지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물품은 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하여 대상물을 촬영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그 결과물을 출력한다는 점에서 광학렌즈와 감광성 필름을 이용한 기존의 카메라와는 작동원리가 다르지만, 대상물의 현상을 그대로 촬영하여 출력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사진기와 차이가 없고, 다만 이를 배경그림과 합성 또는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물품을 원고가 수입한 1997. 6. 30. 10세트의 과세가격이 98,733,387원이고, 이 사건 물품과 동종의 기기 들은 주로 영세상인들이 스티커제작·판매업의 운영

을 위하여 구입한 후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는 문구점, 유원지, 극장가, 서점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1회 이용금액은 1,500원 내지 3,000원 정도이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특별소비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항 제43종 제2류 제1호, 제3조 제3호, 제10조 제2항, 범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통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데,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로 부과하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관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조 제5항, 범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고급사진기 및 동 관련 제품에는 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는 고급사진기에 대한 개념규정은 없고, 단지 그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물품들에 대한 기준가격만을 정하고 있을 뿐인데, ‘기준가격’의 의미가 무엇인가 문제되는 바, 법 제1조 제7항이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제1조 제2항 제4종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가격은 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물품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물품이 사진기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렌즈, 필름, 암상 등 사진기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았고, 그 작동원리도 기존 사진기와는 다르므로, 이 사건 물품이 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이 비록 피사체의 촬영 및 출력방식이 기존의 사진기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얼굴 등 피사체의 현상을 그대로 촬영한 후 이를 출력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사진과 차이가 없으며, 또한 사용자들도 자신의 얼굴 등을 출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기가 제공하는 합성·편집기능은 오히려 부수적인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물품은 사진기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그 가격이 비교적 고가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물품은 일반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상인들이 구입하여 스티커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청소년들이 주된 사용자들로서 그 이용금액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법 시행령이 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 등 사진관련업을 위한 사진기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및 특별소비세법이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주로 일반소비자들의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하여 특정한 물품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물품이 고급사진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1999. 6. 2.